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30

발의연월일: 2025. 3. 7.

발 의 자:문금주・이정문・김승원

허성무 • 박지원 • 이병진

주철현 · 임호선 · 이개호

서삼석 · 조계원 · 이광희

이워택 · 정진욱 · 어기구

김 윤 • 이용선 • 김남근

김문수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초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차문화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차문화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례(茶禮) 교육은 차를 마시는 법,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 절하는 법, 바른 몸가짐 등의 차를 매개로 하는 예절을 배우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사회성 함양에 도움을 주지만 다례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이 없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차문화 진흥을 위해 차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차문화(다례 포함)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례 등의 차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등).

법률 제 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차문화를"을 "차문화[다례(茶禮)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연구·개발 및"을 "연구·개발,"로, "시설·장비"를 "시설·장비 및 차문화 교육에 드는 경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차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차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16조(차문화의 계승・발전 등) 제16조(차문화의 계승・발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 -----차문화 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례(茶禮)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u>같다]를</u>-----차문화의 보급ㆍ지도 등 필요 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 다. 제17조(차문화의 교육 지원) ① 제17조(차문화의 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문 화 교육을 위하여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 영하는 차문화 관련 교육내용 <u>구·개발,-----</u> 의 연구·개발 및 각종 차문화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 ----시설·장비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차문화 교육에 드는 경비-----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 <신 설> 문화 교육을 위하여 차문화체 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 <신 설> 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

런 단체 등에서 아동·청소년 에게 차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다. 이 경우 지원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